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0가단5243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문옥

**피고** 1. A

2. B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변론 종결** 2022. 4. 27.

**판결 선고** 2022. 6. 15.

##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9,238,843원과 그 중 68,560,953원에 대하여 2020. 8. 5.부터 2022. 2. 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7. 6.자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7. 14. 접수 제170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2015. 11. 3.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11. 3.부터 2016. 11. 2.까지, 채권자 기업은행,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보증조건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일 이후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8%이다.

|               |            |               |
|---------------|------------|---------------|
| 2016. 11. 2.  | 85,000,000 | 2017. 11. 2.  |
| 2017. 10. 30. | 76,500,000 | 2018. 11. 2.  |
| 2018. 11. 1.  | 68,000,000 | 2019. 11. 1.  |
| 2019. 10. 31. |            | 2020. 10. 30. |

#### 나. 신용보증사과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5. 11.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20. 6. 30. 자신이 운영하던 C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7. 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다.

#### 다.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통지 및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20. 8. 5. 중소기업은행에게 68,560,953원(= 원금 68,000,000원 + 이자 560,95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지급금 잔액은 677,890원이다.

## 라. 피고들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협의

1) 한편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호협208)을 하여 2020. 6. 9. 진의에 의한 이혼협의 및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모인 피고 B으로 하되 양육비로 피고 A이 1인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성립을 확인받았다.

2) 피고 A은 2020. 7. 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달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69,238,843원(= 68,560,953원 + 677,890원)과 그 중 68,560,953원에 대하여 2020.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2. 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2020. 7. 6.에 있었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2020. 8. 5.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피고 A이 운영하던 사업의 폐업신고 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한 때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A의 무자력 가) 적극재산 : 80,504,560원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2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를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96,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46,995,4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20. 11. 11.자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80,504,560원(= 227,500,000원 - 146,995,440원) 상당이다.

나) 소극재산 : 209,210,953원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68,560,953원, ②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85,970,000원,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④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6,680,000원 합계 209,210,9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1) 피고들의 각 순재산액

갑 제10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20. 11. 11.자 및 2021. 3. 3.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협의이혼성립일인 2020. 6. 9.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들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                                 |                  |                                 |             |
|---------------------------------|------------------|---------------------------------|-------------|
| 피고 A                            | 적극재산             | 이 사건 아파트                        | 227,500,000 |
| 소극재산                            | D은행에 대한<br>대출금채무 | 147,519,416                     |             |
|                                 |                  |                                 |             |
| 순재산액                            | 79,980,584       |                                 |             |
| 피고 B                            | 적극재산             | 오산시 H, I호 (이하 '이 사건 I호'라<br>한다) | 220,000,000 |
| 오산시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br>한다) | 312,045,000      |                                 |             |
| 소극재산                            | D은행에 대한<br>대출금채무 | 96,568,453                      |             |
|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 146,000,000      |                                 |             |
|                                 |                  |                                 |             |
| 순재산액                            | 289,476,547      |                                 |             |

① 피고 B은, 이 사건 I호는 피고 B의 모 L의 도움을 받아 구입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B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8. 6. 이 사건 I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피고 A과 혼인기간 중에 이 사건 I호를 매수한 점, L는 2015.  
8. 5. 피고 A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L의 피고 B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A이 이 사건 I호의 매수로 인한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각종 비용과 이 사건 I호에 설정된 D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2015년  
소득금액은 3,190만 원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I호가 피고 B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I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억  
4,600만 원,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억 원 및 피고 B의

금융자산 6,600만 원 가량을 더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 B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9. 8. 1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1호를 피고 B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이 사건 상가 역시 피고 B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B의 2016년 소득금액은 20,100,000원, 2017년 소득금액은 35,32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 B의 소득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66,000,000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의 소득금액으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 A의 수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유지 내지 감소방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가 피고 B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두 자녀들을 양육하여 온 점, 피고 B은 피고 A과 이혼하면서 두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한 점, 이 사건 1호를 매수할 당시 피고 B의 어머니 L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재산분할비율은 피고 B 70%, 피고 A 30%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순재산액 합계가 369,457,131원(= 79,980,584원 + 289,476,54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 B의 몫은 258,619,991원(= 369,457,131원 × 0.7, 원 미만 버림)이고, 피고 A의 몫은 110,837,140원이라 할 것이다.

## (3) 소결론

앞서 본 재산분할비율에 따르면, 피고 B은 피고 A에게 재산분할로써 30,856,556원(= 110,837,140원 - 79,980,584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본인의 몫을 초과하는

369,347,131원을 취득한 반면, 피고 A이 재산분할에 따라 얻은 재산은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전체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이는 그 전부가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윤희**

별지